##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243

제출연월일: 2018. 8. 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성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강화 및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담당관 신설: 시책추진담당관 (안 제4조)

나. 부서 명칭 변경 : 전산정보과 → 정보통신과 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 나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8. 1 ~ 2018. 8. 6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(평가 제외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(평가 제외)
- 5) 신 · 구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"감사담당관, 공보담당관"을 "감사담당관, 공보담당관, 시책추 진담당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전산정보과"를 "정보통신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담당관) 부구청장 밑에 <u>감</u>	제4조(담당관) <u>감</u>
사담당관, 공보담당관을 둔다.	사담당관, 공보담당관, 시책추
	진담당관
제5조(행정관리국에 두는 과) ①	제5조(행정관리국에 두는 과) ①
행정관리국에 총무과, 자치행정	
과, 교육지원과, 문화체육과, <u>전</u>	<u>정</u>
<u>산정보과</u> , 민원여권과를 둔다.	<u>보통신과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1개 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2항제1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1개 담당관 신설에 따른 추가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워 미만으로 미첨부

#### 4. 작성자

- 총무과 행정6급 김재곤 (연락처 ☎2286-5095)

## < 관계법규>

- □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  제13조(시・군・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
 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
 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
  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 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시구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  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 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4.

행정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8. 8. 17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8. 8. 20.

다. 상정일자: 2018. 8. 29.

(제24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## 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행정관리국장

나. 제안이유

성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강화 및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담당관 신설 : 시책추진담당관 (안 제4조)

나. 부서 명칭 변경: 전산정보과 → 정보통신과 (안 제5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나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8. 8. 1 ~ 2018. 8. 6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2) 규제심사 결과,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(평가 제외)

## 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시책 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'시책추진담당관'을 신설하고, 부서명을 주민에게 보다 익숙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'전산정보과'를 '정보통신과'로 변경하는 등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 제3 항에 따르면,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 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 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토록 하고 있 는 바,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 성격과 기능, 업무량,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임
- 아울러, 시책추진담당관의 설치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호응과 관심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, 추후 시책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조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

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
**7. 토론요지:**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:** 없음